

01

어떤 연금혜택이 있나요?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시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노령연금(분할연금)**을 받게 되시며, 그 외에도 지급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연금**, **유족연금**과 일시에 지급하는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1년 12월 현재까지 연금을 받은 사람은 330만명을 넘어섰으며 현재 계속해서 받고 계신 분은 약 302만명입니다. 평균적으로 약 28만원을 받고 계시며, 최고로 받고 계신 분은 134만원을 받고 계십니다.

1. 노령연금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65세) 이후부터 평생동안 매월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으로 구분되어 연금지급액이 달라지게 되며, 파생급여로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구 분	수 령 요 건	연금액 수준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서 60세에 도달한 경우	기본연금액 $\times(50\sim 100\%)^{※1}$ + 부양가족연금액 ※ 가입기간 10년이면 50%, 1년 증가할 때마다 기본연금액 지급률 5%씩 증가
재 직 자 노령연금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기본연금액 $\times(50\sim 100\%) \times (50\sim 90\%)^{※2}$ ※ 연령 1세 증가할 때마다 연령별 지급률 10%씩 증가 (61세 60% ~ 64세 90%)
조 기 노령연금	55세 이상이면서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본연금액 $\times(50\sim 100\%) \times (70\sim 99.5\%)^{※3}$ + 부양가족연금액 ※ 연령 1세 증가할 때마다 연령별 지급률 6%씩 증가(55세 70% ~ 59세 11개월 99.5%)
분할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이혼한 배우자가 60세가 된 경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1/2

국민연금 연금지급액

● 국민연금 연금지급액 구성

연금급여액 = 기본연금액(×연금종류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이란

- 모든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며,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소득재분배 기능)과 가입자 본인의 평균소득(소득비례 기능) 및 가입기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 10년 가입 시 노령연금은 기본연금액의 50% 지급됨
 - ※ 가입기간 1년 증가할 때마다 기본연금액 지급률 5%씩 증가
 - ※ 20년 가입시 노령연금은 기본연금액의 100% 지급됨
- 장애연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지급률이 결정되고,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지급률이 결정됨

● 부양가족연금액이란

- 연금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가 일정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으로 추가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지급대상	연령 및 장애 요건	부양가족연금액
배우자	-	연 236,360원
자녀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	연 157,540원 (1인당)
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	연 157,540원 (1인당)

※ 2012년 4월~2013년 3월까지 적용되는 부양가족연금액이며 매년 물가 변동률에 따라 조정(2012년 4% 인상 조정한 금액임)

● 연금지급일

- 연금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25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받게 됩니다.
-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의 경우에는 청구 즉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연장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현재 60세(조기노령연금은 55세)이나 2013년부터 5년마다 단계적으로 1세씩 연장되어 2033년 이후에는 65세(조기노령연금은 60세)가 됩니다.

노령연금, 분할연금, 반환일시금		조기노령연금			
		2012년 12월 이전		2013년 1월 이후	
~'52년생	60세부터	~'57년생	55세부터	~'52년생	55세부터
'53~'56년생	61세부터	'58~'61년생	56세부터	'53~'56년생	56세부터
'57~'60년생	62세부터	'62~'65년생	57세부터	'57~'60년생	57세부터
'61~'64년생	63세부터	'66~'69년생	58세부터	'61~'64년생	58세부터
'65~'68년생	64세부터	'70~'73년생	59세부터	'65~'68년생	59세부터
'69년생~	65세부터	'74년생~	60세부터	'69년생~	60세부터

● 노령연금 지급의 연기(연기연금제도)

본인의 희망에 의해 1회에 한하여 65세 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금지급을 연기할 수 있으며, 나중에 연금을 지급할 때에는 연기기간동안 매 1개월마다 0.6%(1년 7.2%)에 해당하는 연금을 더하여 받게 됩니다.

● 노령연금 지급기간

60세(~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조기노령연금의 경우 수급요건을 충족한 이후 청구한 날의 다음달부터 지급)

▶ 국민연금급여 청구 소멸시효 안내

국민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연금급여는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의 연금지급분부터 지급)

2. 장애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정도 (1급~4급)**에 따라 **일정한 연금을 지급**합니다.

● 장애등급 결정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정도에 따라 1급~4급으로 결정하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완치"란 부상 또는 질병이 의학적으로 치유되었을 때 또는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증상이 안정되고 장기간에 걸쳐서 그 장애의 고정성이 인정되는 최종 상태를 말합니다.

▶ 장애등급 결정 사례

-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됨 ⇒ 장애 1급 판정
-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치료를 받음 ⇒ 장애 2급 판정
- 사고로 한 손의 첫째 및 둘째손가락을 상실함 ⇒ 장애 3급 판정

● 장애연금액

장애등급에 따라 1급~3급까지는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져 매월 연금으로 지급되며 장애 4급의 경우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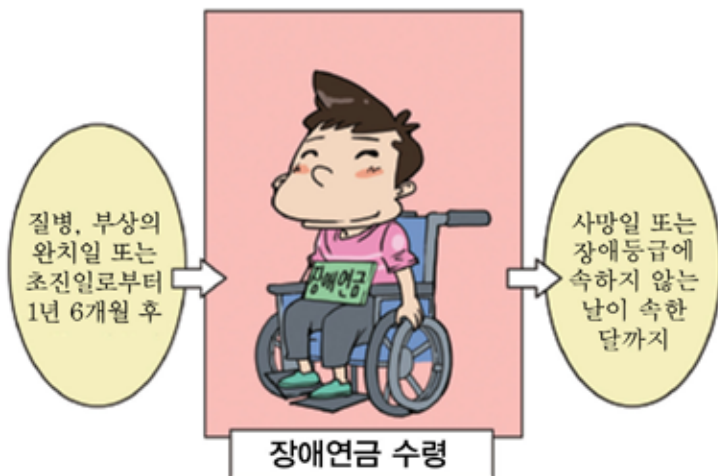
! 장애등급별 장애연금액 !

장애 1급	장애 2급	장애 3급	장애 4급 (일시 보상금)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225%

※ 장애 등급에 따라 연금지급액이 결정됨

● 장애연금 지급기간

질병 또는 부상의 완치일 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망일(장애가 호전되어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장애등급 미해당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연금보험료 미납에 따른 장애연금 지급제한 안내

초진일 당시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단,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3.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연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지급합니다.

- 노령연금 또는 장애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국민연금 가입 중에 사망한 경우(단,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함)
-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한 경우(단, 가입기간 10년 미만의 가입자였던 분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가입 중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 유족연금 지급사례

- 노령연금을 지급받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지급
-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가입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유족연금 지급
- 남편이 만성신부전증으로 장애등급이 2급인 장애연금을 지급받던 중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유족연금 지급

● 유족에 해당하는 사람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지 급 대 상	대상자 요건
배우자(사실혼 포함)	연령 또는 장애요건 등 제한 없음
자 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손 자 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 유족연금액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에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져 매월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 가입기간별 유족연금액 !

10년 미만	10년 이상 ~ 20년 미만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다만, 노령연금수급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 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지급받던 노령 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유족연금 지급기간

가입자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자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단, 배우자인 수급권자의 재혼,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의 19세 도달 또는 입양·파양, 장애 2급 이상으로 수급권자가 된 자가 장애 2급 이상에 미해당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연금보험료 미납에 따른 유족연금 지급제한 안내

사망일 당시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납부한 기간이 납부하여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단,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에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4. 반환일시금

60세(∼65세)가 되었을 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국외이주 등으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에 지급하는 급여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분이 60세(∼65세)가 된 경우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분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급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경우

● 반환일시금액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소정의 정기에금 이자율)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5. 사망일시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분이 없는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장제 부조비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사망일시금액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하되, 최종 기준소득월액(가입 중 결정된 각각의 기준 소득월액 중 마지막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 기간 중 평균 소득월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03

함께 나누는 이야기(연금 받는 분들의 이야기)

❀ | 이 은 화 (노령연금 수급자 가족) |

국민연금은 저에게 새로운 이름을 안겨 주었습니다. “효녀 딸”이라는 명함입니다. 약 14년 전쯤 우연히 라디오에서 “특례노령연금” 안내를 듣게 되었습니다. 순간 저는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힘 있고 활동능력이 좋을 때 몇 년 참고 납입하면 나라에서 부모님께 평생 월급을 준다고 하니 부모님 용돈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욕심에 무조건 가입은 했지만 가게생활 비가 큰 산처럼 버티고 있어서 절약 또 절약을 몸에 담고 짚순이로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부업으로 이력서를 꽉 채워나갈 때쯤 5년의 국민연금을 완납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끝냈다는 기쁨과 뿌듯함이 밀려들었습니다.

2005년 3월부터 국민연금을 부모님 두 분이 똑같이 수령하게 되었을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이 밀려왔습니다. 엄마는 매달 받으실 때마다 “우리 딸이 억척스럽게 땀 흘려 나라에 맡겨두었던 돈” 이라면서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국민연금은 한 가정에 희망을 가져다주고 자식들에게는 부담을 덜어주는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그 시절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고 납입했던 총 금액이 360만원 정도였는데, 지금까지 부모님이 받은 금액이 원금을 훨씬 넘어서 760만원이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단순히 용돈 걱정 덜자고 했지만 결과물을 놓고 봤을 때 감동 두 배, 행복지수 무한대입니다.



누구도 앞날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연금의 중요성을 누구에게든 강조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국민연금 가입부터 확인하시라고, 시작이 절반입니다. 저와 같은 서민가정의 모든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되어 줄 수 있는 “황금알을 낳아주는 국민연금의 혜택을 놓치지 마시라고”...

❀ | 윤 상 인 (장애연금 수급자 가족) |

보험이나 연금이라고 하면, 언제 어떻게 받게 될지도 모르는데 뭘... 하는 생각으로 그냥 지출이라는 생각밖에는 큰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그 혜택이라는 걸 받는 일이 먼 훗날의 일도 남의 일도 아니게 되었다. 남편이 신장 투석으로 인해 장애2급 판정을 받게 된 것이다. 남편의 몸이 계속 안 좋아지고 회사도 다닐 수 없게 되자 남편은 조그만 호프집을 하나 차렸는데 빚만 남긴 채 실패를 하고 말았다. 그리고 둘째까지 태어나고, 돈만 까먹고 있을 때, 우리한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남편에게 지급되는 장애연금 뿐이었다.

2009년 8월에 소급분이라며 400여만 원의 연금이 지급되고 그 뒤로 다달이 41만 3800원씩 지급되었다. 남편의 병원비와 약값도 부담스러운 때였다. 그런데 그 금액은 충분히 충당하고도 남을 만큼의 연금이라니... 믿음직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연금제도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니...

그리고 우리가 국민연금으로 인해 도움을 받은 건 그뿐만이 아니었다. 수입이 없어 월세 내기가 너무 벅차 작은 전셋집을 구하게 되었는데 돈이 부족했다. 어떻게든 구해보려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나를 부르시더니, 통장 하나를 내미셨다. 2005년도부터 다달이 20여만 원씩 지급되는 노령연금에 자식들이 간간히 드린 용돈까지 모두 모아둔 통장을 선뜻 내미시는 어머니를 보며 감사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이 뒤섞여 하염없이 눈물만 났다.

1년 9개월간 받은 연금이 벌써 1,400만원이 넘었고, 2013년도면 낸 연금보다 받는 연금이 더 많아진다. 거기다 어머니께서 우리에게 주신 돈도 국민연금을 받아 모아두신 돈이니, 국민연금이 없었다면 내가 정말 절실히 필요할 때 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스스로 준비하기 힘든 미래에 대한 준비를 대신해 주는 국민연금 이야 말로 내 인생의 동반자가 아닐까 싶다.

